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직위 중 부대변인 및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제외하고, 전략조정담당관,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및 녹색환경외교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서 제외하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내 연구부와 연구센터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연구센터를 연구부 산하로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21. ~ 6.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부대변인, 감사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을 “공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략조정담당관, 국제법규과장, 디지털공공외교과장, 지역경제기구과장, 유럽경제외교과장, 녹색환경외교과장”을 “국제법규과장, 지역경제기구과장, 유럽경제외교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① ~ ③ (생략) ④ 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중국연구센터, 외교사연구센터, 국제법센터, 일본연구센터 및 아세안·인도연구센터 등 외교안보연구소 내 연구센터 운영</u> 5. (생략) ⑤ (생략)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기후변화대사, <u>부대변인, 감사관, 외교전략기획관,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부장 1명</u> 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3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 ----- <u>감사관</u>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말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책홍보담당관, 전략조정담당관, 국제법규과장, 디지털공	

공외교과장, 지역경제기구과장, <u>유럽경제외교과장</u>, <u>녹색환경외 교과장</u> 및 국립외교원 외국어교 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u>제외교과장</u> ----- ----- ----- ----- -----.
--	--